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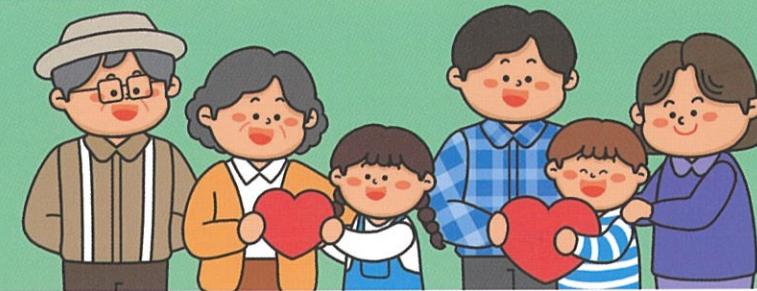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장내역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의사 사고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를 받은 경우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만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당신의 든든한 장수군민 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전입자 자동가입 /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4. 2. 1. 0시 ~ 2025. 1. 31. 24시 (1년)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
 - 기타서류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별도 서류
- 문 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
장수군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 063-350-2486)



보험 상세 설명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태풍, 흥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을 위해 승·하차, 탑승 중 및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의사사고 사망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흥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라 함은?

-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 승용이양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 자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 063-350-2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